

【 주간이슈 】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제한에 대한 논의

최형선 부연구위원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 금융상품에 어떠한 보험상품이 포함될 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
 - 대통령이 정하는 신용카드 금지 대상 금융상품은 ①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및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과 ② 신용카드의 일시불 무이자 신용공여 기간을 이용한 차익거래 가능성이 있는 예·적금 및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 등임.
- 보험상품은 금융상품으로서 특히 장기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위험보험료와 일정한 이율이 적용되는 저축(적립)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어 신용카드 결제가 금지되는 금융상품 및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일반적으로 보험상품은 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된 상품과 위험보험료와 저축(적립)보험료가 결합된 상품으로 분류 가능
 - 위험보험료로 구성된 상품은 대부분 자동차보험과 같은 손해보험상품으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성
 - 위험보험료에 저축(적립)보험료가 결합된 상품은 종신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과 같은 보험상품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성
 - 대부분의 장기보험상품 보험료 중에서 저축(적립)보험료는 위험보험료보다 월등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
 - * FY08 기준 장기손해보험 구성비: 위험보험료 20.1%, 저축보험료 57.9%
FY08 기준 사망보험(종신,건강 등) 구성비: 위험보험료 19.7%, 저축보험료 50.6%
- 장기보험은 예·적금(예정이율 적용) 또는 금융투자상품(변액보험)과 유사한 저축보험료와 위험보험료가 결합된 형태이며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
 - 예·적금과 금융투자상품이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포함되었다면 이와 유사한 성격의 장기보험상품도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동일기능·동일규제'라는 정부의 감독규제 방향에 부합

본고는 연구담당자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논의 배경

- 금융위원회는 2010년 4월 12일 신용카드 결제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신용카드 결제 대상을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규정
 - 금지 대상을 ① 부채상환, ②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 게임물(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등),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상품 및 사행행위 등으로 구체화
 - 금지 대상 중 대통령이 정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① 원본손실 가능성이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및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과 ② 신용카드의 일시불 무이자 신용공여 기간을 이용한 차익거래 가능성이 있는 예·적금 및 이에 준하는 금융상품 등임.
- 동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에 따라 보험상품 중 어떠한 보험상품이 신용카드 결제가 금지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
 - 현재 은행 및 금융투자회사와는 달리 보험회사는 신용카드 가맹점으로서 보험료의 신용카드 수납이 증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동 문제는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
- 이에 따라 본고는 보험상품의 신용카드 결제와 관련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보험상품의 특징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금융상품의 정의를 법률로서 명시하지 않은 상황이나 통상적으로 여러 법률에서 보험회사는 금융기관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보험상품도 금융상품으로 간주됨.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마목¹⁾에 따르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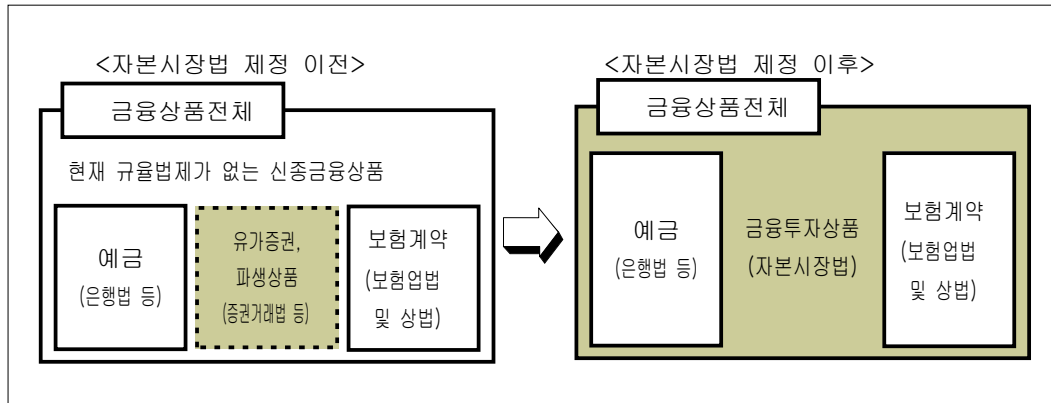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 1항 6목의 3²⁾에서도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지주 회사에 보험지주회사를 포함하고 있음.
- o 2006년 당시 재정경제부의 「자본시장법」 설명자료에 따르면 보험상품은 금융상품에 포함됨.

<그림 1> 자본시장법 제정 전·후 금융상품의 범위



자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설명자료, 재경부, 2006.6.30

□ 장기보험상품 대부분의 경우 위험보험료와 일정한 이율이 적용되는 은행의 예·적금이나 금융투자상품 성격의 저축(적립)보험료가 결합된 보험상품

- o 일반적으로 보험상품은 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된 상품과 위험보험료와 저축(적립)보험료가 결합된 상품으로 분류 가능
- o 위험보험료로 구성된 상품은 대부분 자동차보험과 같은 손해보험상품으로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성
- o 위험보험료와 저축(적립)보험료가 결합된 상품은 종신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등과 같은 보험상품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성
 - 장기보험상품 보험료 중에서 저축(적립)보험료는 위험보험료보다 월등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³⁾

□ 따라서 이들 장기보험상품의 경우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신용카드 결제가 금지되는 금융상품 및 금융투자상품과 매우 유사한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

2)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의 3. “보험지주회사”란 「보험업법」 제2조제5호의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를 포함하여 10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비은행지주회사를 말한다.

3) 보험개발원에 자료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FY08 기준 장기손해보험 구성비는 위험보험료 20.1%, 저축보험료 57.9%이며 사망보험(종신,건강 등) 구성비는 위험보험료 19.7%, 저축보험료 50.6%임.

3.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및 높은 수수료

□ 가맹점 입장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는 신규매출 증대를 위한 일종의 비용

- 현금이 부족한 고객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어 가맹점의 입장에서는 신규매출이 증대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수수료는 매출 증대를 위한 일종의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러한 이유에서 가맹점이 수수료를 부담
- 우리나라의 경우 동 수수료를 여전법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에게 전가할 수 없음.

<표 1> 여전법 제19조 1항, 3항과 제70조 3항의 내용

<p>제19조</p> <p>1항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p> <p>3항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70조</p> <p>3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4.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p> <p>5.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p>

□ 신용카드시장은 양면시장⁴⁾으로서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회원을 배경으로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협상에서 우위를 보이면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함에 따라 수수료의 적정 수준에 대한 논란이 지속

-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현재 보험회사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서 보험료 수납 시 신용카드사에 평균적으로 건당 해당금액의 2.6~3.2%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계좌이체(자동이체) 수수료가 건당 150원인 것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

4) 양면시장이란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 가맹점이라는 상이한 대상을 동시에 상대한다는 의미. 따라서 신용카드 회원을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가맹점과의 수수료 협상에서 유리.

4. 보험상품 신용카드 결제 시 문제점

- 예·적금 성격의 저축성 보험, 금융투자상품의 성격을 가진 변액보험, 그리고 이들 기능이 모두 결합된 종신보험 등이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이는 ‘동일기능, 동일규제’라는 정부의 감독규제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
 - 즉, 은행 및 금융투자업이 향후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더라도 이들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지 않으나 이와 유사한 성격의 보험상품은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게 됨.
 - 정부는 「자본시장법」 제정을 통해 감독체계를 기관별 감독체계에서 기능별 감독체계로 전환하였으며 향후 은행법과 보험업법을 포괄하는 금융통합법이 제정되더라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은 지속될 것임.

- 또한 보험상품이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에 제외되면 보험회사의 수수료 부담이 확대되는 한편 가맹점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취지에도 어긋나게 되는 결과가 초래
 - 법적으로 보험상품이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명시된다면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보험회사의 협상력이 더욱 약화될 가능성
 - 더욱이 협상력 약화에 따른 보험회사의 부담 증가는 보험료의 불필요한 상승을 유발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음
 - 실손의료보험, 종신보험 등과 같은 장기보험의 경우에도 초회보험료를 제외한 계속보험료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하는 것은 가맹점이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는 취지에 어긋남.
 - 장기보험의 계속보험료는 초회보험료와는 달리 보험회사의 신규매출 증대와 무관하며 따라서 계속보험료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를 허용하여 보험회사가 동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
 - 싱가포르 보험회사인 NTUC Income 경우⁵⁾ 생명보험의 초회보험료에 한해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
 - 이러한 측면에서 자동차보험 등 1회성 보험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 및 보험회사의 수수료 부담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5) www.income.com.sg/insurance/paymentmode.asp

5. 개선 방안

가.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보험상품을 포함

□ ① 은행의 예·적금과 유사한 저축성 보험, ② 금융투자상품과 유사한 변액보험, ③ 위험보장기능에 저축(투자)기능이 결합된 종신보험 등 장기보험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

- 이는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및 가맹점 수수료 부담 취지와 부합
- 반면 자동차보험 등 보험료에 저축(적립)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 보장성 보험의 경우 현재와 같이 신용카드 결제 허용

□ 이러한 보험상품이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최소한 장기 보험 계속보험료의 신용카드 결제는 금지될 필요가 있음.

- 이는 가맹점이 신용카드 수수료를 부담하는 취지에 부합

나. 신용카드 수수료의 대폭 인하

□ 위에서 언급된 보험상품이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를 국세의 신용카드 수수료 수준으로 인하할 필요

<표 2> 국세 납부대행 수수료의 구성

구 분	설 명	수수료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고객이 납부할 국세를 카드사에서 국세청에 선 지급함에 따라 발생하는 카드사의 자금조달 및 부대비용 등에 대한 수수료	납부세액의 1.2%이내
납부대행기관 운영경비	국세납부대행서비스 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국세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주: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의3(신용카드 등에 의해 국세납부)

자료: 금융결제원 세금 카드납부 서비스 (<http://www.cardrotax.or.kr/index.giro>)

- 국세청의 경우 금융결제원과의 제휴를 통해 국세·관세 신용카드 납부대행 서비스⁶⁾⁷⁾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수료는 1.2%에 불과하고 동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

- 김재진(2008)⁸⁾은 현금 납부자와의 형평성 문제나 국가재정 부담 등을 감안할 때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⁹⁾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

다. 가맹점 탈퇴 고려

□ 은행과 금융투자회사와 같이 보험회사도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탈퇴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

- 현재 은행과 금융투자회사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니므로 여전법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이들이 제공하는 금융상품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음.
- 보험회사도 신용카드 가맹점 탈퇴를 통해 보험료의 신용카드 수납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기존의 보험계약자에 대해서는 계좌이체 또는 현금 납부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

□ 그러나 이 경우 자동차보험과 같은 순수 보장성보험 및 장기보험의 초회보험료도 현금과 계좌이체로만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소비자편익이 크게 저하될 우려.¹⁰⁾ KiRi

6)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46조 2호(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

7) <http://www.cardrotax.or.kr/index.giro>

8) 김재진,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 납부제도 도입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08.

9) 미국과 영국에서도 신용카드 납부대행 서비스가 시행중이며 미국의 경우 납부대행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

10) 보험영업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참고> 신용카드 결제와 관련한 해외제도

- 먼저 미국, 일본, 영국 등에는 우리나라 여전법과 같이 신용카드 규제를 분리하여 명시한 법률이 부재
 - 미국의 경우 소비자신용 보호법인 「Regulation Z」에는 신용카드 수납강제 조항이 존재하지 않고 뉴욕주 보험법에서도 보험료 납입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일본의 경우도 일본 보험업법 및 하위법령에서는 보험료 납입방법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영국도 보험영업행위준칙(ICOB: Insurance Conduct of Business)에서는 보험료 납입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음.

- 미국, 일본, 영국 등에는 우리나라 여전법 제19조 1항에서 같이 신용카드 결제 거부에 대한 법적인 제재 조항도 없음.
 - 미국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는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계약으로 결제 거부 시 법적 제재조항은 없음.
 - 일본의 경우 신용카드와 관련한 직·간접적인 법률(소비자계약법, 개인정보보호법, 할부판매법 등)에 카드결제 거부와 관련한 직접적인 규제가 존재하지 않음.
 - 영국도 신용카드 결제 거부 시 법적인 제재 조항은 없음.

- 여전법 제19조 3항에 명시되어 있는 수수료전가 금지 규정은 미국, 일본, 영국 등에는 없음.
 - 미국 연방법인 대부진실법(Truth in Lending Act)에서는 수수료전가 금지와 관련한 조항이 없음.
 - 다만 뉴욕 주(상법 제518조)를 포함한 일부 주에서는 수수료전가 금지 규정을 주법에 명시하고 있음.
 - 영국과 일본에는 수수료 전가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으므로 수수료 전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호주는 2002년 카드 지급시스템 개혁안(Card Payment Systems Reforms)을 발표하면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및 수수료 전가를 허용
 - 정산수수료(Interchange Fee)¹¹⁾ 인하, 카드결제 시 부가수수료(Surcharge) 고

객전가 허용, 카드가맹점이 모든 카드를 수용해야 하는 원칙(Honor-All-Card Rule) 폐지, 다른 지급수단을 유도하는 것을 금지(No-Steering Rule)한 조항 폐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표 3> 카드 지급시스템 개혁안 주요 내용

정산수수료 인하	- 카드발급사와 전표매입사 사이의 정산수수료 상한제 도입			
	구 분	규제실시 이전	2003년	2006년
	신용카드	0.95% 수준	최고 0.55%	최고 0.5%
	직불카드	0.55% 수준	거래 건당 \$0.15	거래 건당 \$0.12
카드가맹점 규제완화	- 카드결제 시 부가수수료 카드고객에게 전가 허용 - Honor-All-Card Rule 폐지 - No-Steering Rule 폐지			

자료: 김태준, 「호주 중앙은행의 카드산업 규제와 시사점」, 계간 신용카드, 2008.

11) 호주의 카드결제시스템은 4당사자체제 구조이며 4당사자란 카드고객, 카드발급사, 전표매입사, 카드가맹점 등 카드결제에 관여하는 주체를 지칭함. 카드결제 시 카드고객이 카드대금을 카드발급사에 납부하고, 카드발급사는 카드대금을 전표매입사에 지급하게 됨. 이어서 전표매입사는 카드대금을 카드가맹점에 지급함. 이 때 전표매입사는 가맹점으로부터 가맹점 수수료를 수취하여 카드발급사에게 정산 수수료를 지급함.